

	시설물사용에 관한 규정	문서번호	MSU-
		제정일자	2014. 4. 3.
		최종개정일자	2022. 4. 1.
		담당부서	행정지원처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목포과학대학교(이하 “대학” 이라 한다)의 각종 시설물에 대한 외부 기관 등의 사용 요청 및 승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대학 시설물을 일시적으로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특별히 정한 것 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용허가범위) 각종 시설물의 사용허가는 우리대학 교육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에 허가한다.

제4조(시설물의 범위) 대학의 시설사용 허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대세미나실, 소세미나실, 강의실, 등 교육시설물
- ②영신관, 운동장 등 체육시설물

제5조(업무처리) ①대학의 모든 시설물 사용 승인에 관한 업무는 행정지원처에서 관장한다.

- ②사용 승인 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관련부서의 사전 협조를 구한다.

제6조(신청방법) 대학 학과(부서) 및 외부기관에서 대학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1호> 서식을 작성하여 행사명, 행사기간 및 대상인원 등을 명시한 시설물 신청서를 행정지원처에 신청하여 허가를 득한 후 사용한다.

제7조(준수사항) 대학 시설물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 ①사용승인 목적 이외의 사용금지
- ②사용기간 및 시간엄수
- ③질서유지
- ④기타 관련부서에서 지시하는 사항

제8조(사용제한) 사용자가 대학 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다음의 경우에는 시설물 사용을 제한하거나 불허할 수 있다.

- ①교육, 연수, 근무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 ②사용규칙을 위반하여 시설물을 파괴, 또는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 ③시설물의 개·보수 및 설치공사 또는 작업 등으로 시설물 사용이 곤란 한 경우
- ④기타 사용 목적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9조(사용료) ①사용자는 <별지 2호>에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②사용료는 대학 계좌로 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사용료의 면제) 시설 이용자에 대해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 ①대학에서 초청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의 시설물 사용
- ②기타 공공목적 수행 등에 대해 대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변상) 대학 시설물 사용 시 안전사고 및 시설물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사용 중 대학 시설물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및 그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설물 사용 안내

우리대학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목포과학대학교 시설물 사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우리대학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5일전에 소정의 양식(또는 공문)에 따라 시설 이용 신청서를 관리 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우리대학 시설물 사용 책임자와 이용자는 아래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 교육, 연수, 근무 분위기를 해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승인 시 약속한 제반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 시설 및 용품의 이용 시 선량한 이용자로서 사용하여야 합니다.
 - 각종 안전사고에 적극 유의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시설 사용 후 정리정돈과 청결을 항상 유지하여야 합니다.
3. 승인없이 출입하거나 기타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본교 출입을 통제 하거나 즉각 이용을 중지시키고 퇴실을 명하게 됩니다.
4. 학교 시설 이용 승인 시 고지된 시설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목포과학대학교총장

〈별지 1〉

시설물사용승인신청서

신청인	기관명		전화번호											
	주 소													
	대표자성명		신청인성명		연락처									
이용시설														
이용일시														
이용사유														
이용인원														
사용조건	가. 목포과학대학교 시설물은 본교 학생이 우선이므로 학교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학교 시설물 파손 시 변상해야 하고 신체 또는 기구, 물품 등의 사고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라. 사용목적과 범위를 넘어 다른 사람의 시설물 이용에 방해가 되면 안 됩니다. 마. 목포과학대학교 시설물의 사용에 관한 내부규정을 준수합니다.													
「목포과학대학교 시설물 사용에 관한 규정」제6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명 : 성 명 : (서명) 목포과학대학교총장 귀하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h style="width: 25%;">담 당</th><th style="width: 25%;">과 장</th><th style="width: 25%;">행정지원처장</th><th style="width: 25%;">총 장</th></tr> <tr> <td style="height: 80px;"></td><td></td><td>전결</td><td></td></tr> </table>							담 당	과 장	행정지원처장	총 장			전결	
담 당	과 장	행정지원처장	총 장											
		전결												
● 본건의 승인 여부(승인/조건부승인/불가) ● 시설이용료(징수/면제)														

〈별지 2〉

시설물 사용료 기준표

구 분		금액	수용 규모	주요장비	산출 기준	비고
연구동	대세미나실	250,000	319석	방송장비, 빔프로젝트, PC	1일	
	소세미나실	150,000	122석	방송장비, 빔프로젝트, PC	1일	
강의동	본관 제1~6강의실 (1실당)	60,000	190석	책상, 교탁, 의자	1일	각실당 40-50석
	진리관 제1~12강의실 (1실당)	60,000	720석	책상, 교탁, 의자	1일	"
	연구관 제1~8강의실 (1실당)	60,000	400석	책상, 교탁, 의자	1일	"
	탐구관 제1~6강의실 (1실당)	60,000	300석	책상, 교탁, 의자	1일	"
	건축관 제1~2강의실 (1실당)	60,000	60석	책상, 교탁, 의자	1일	"
체육 시설	영신관	300,000	-	-	1일	
	운동장	100,000	-	-	1일	

※ 상기 시설 사용료는 공공요금(전기료, 수도료, 냉·난방료, 청소비 등)이 포함된 금액임